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 ※ 주의사항

- 장관표창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의 경우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Ministry of Labor (고용노동부).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뉴스·소식' (News & News), which is circled in red with a '1'. Below it, the '공지사항' (Notice) link is also circled in red with a '2'. The search bar contains the text '산업재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Th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산업재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e search bar contains the text '산업재해' and the search button is labeled '검색' (Search). The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in a table with columns for '전체' (All), '광고' (Advertisement), '행사' (Event), '입찰' (Bidding), '인사' (Personnel), '포상대상자공개' (Award Recipient Disclosure), and '기타' (Other).

③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전체	공고	행사	입찰	인사	포상대상자공개	기타
전체		산업재해		검색		
전체 226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게시물 확인 <span style="float: right;">10건 보기</span>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	
226	[공고] 2024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2024.12.23	1,751	
225	[인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인사계	📎	2024.12.02	659	
224	[포상대상자공개]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 포상 수상자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2024.11.08	1,877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범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②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